

미사 거행에 관하여

미사 거행의 여러 형태

본당 미사

1. 공동체 특히 본당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미사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특별히 주일의 본당 미사는 보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미사 지침, 75 항)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

2. 거행하는 미사 가운데 매일의 의무인 ‘수도원(Conventualis) 미사’ 또는 ‘공동체(Communitatis) 미사’라고 하는 미사는 특기할 만하다. 이들 미사의 집전 양식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노래 미사로 봉헌하고, 특히 수도자들이든 의전 사제들이든 그 공동체의 모든 회원이 이런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런 미사에서 참여자는 각기 받은 품계 또는 직무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사제는 가능한 한 이런 미사에서 공동 집전하는 것이 좋다.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사제로서 교우들의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미사를 드릴 의무가 있는 모든 사제는 같은 날 ‘수도원 미사’나 ‘공동체 미사’도 공동 집전할 수 있다. (미사 지침, 76 항)

공동 집전

3. 성찬례의 공동 집전으로써 미사 성제와 사제직의 단일성이 잘 드러나며,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느님 백성의 일치도 뛰어나게 표현된다. 특히 주교가 주례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공동 집전은 사제들의 형제적 유대를 드러내고 복돋아 준다. 공통된 성품과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제는 서로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목적 관심에서 언제나 세심히 고려해야 할 교우들의 선익에 아무 손실이 없고 사제 각자의 개별 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사제들의 공동체에서나, 정례 모임에서나 또 비슷한 환경에서는 탁월한 공동 집전 방법으로 사제들이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동 생활을 하는 사제들이나 같은 성당에 봉직하는 사제들은 자기네 공동 집전 미사에 손님 사제들도 기꺼이 초대하여야 한다.
(성체 공경 훈령, 47 항)

교중 미사

4.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본당에 취임한 뒤 주일마다 그리고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드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이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직접 그 지향으로 미사를 드려야 한다.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여러 본당 사목구를 맡은 주임사제와 여러 교구의 사목을 맡은 교구장은 위에 언급된 날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 전체를 위한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만 드릴 의무가 있다. (교회법, 제 388.534 조)

교우들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 의무는 이 전례력에서 그 날짜 아래에 † 로 표시하였다.

- 1)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전례력 지침 제 7 항에 따라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1 월 2 일과 8 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 7 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 월 8 일), 성 요셉 대축일(3 월 19 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 월 29 일), 모든 성인 대축일(11 월 1 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한다. (교회법, 제 1246 조 1.2 항)

2)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를 여러 대 집전하는 본당 주임사제는 한 대의 미사 예물만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미사 예물은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중 미사 규정은 1985년 10월 14-17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를 받았다.>

주일과 축일을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하는 미사

5. 미사 참여의 의무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 (교회법, 제 1248 조 1 항)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되는 미사는 그 축일 미사에 지시된 모든 것을 그대로 거행하여야 한다. (미사 지침, 77 - 78 항 참조) 미사 기도문의 선택에서는, “서로 겹치는 두 축일의 전례일 등급과는 별도로, 언제나 의무 축일의 거행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저녁기도는 저녁 미사 거행과 일치되도록 (경신성 공보 20<1984>603) 성무일도 일반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8면 3항 참조)

예식 미사, 신심 미사, 여러 가지 기원 미사와 위령 미사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시기

기원 1 : 예식 미사와 매우 중대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 때문에 교구장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미사 지침, 330.332 항)

기원 2 : 참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본당 주임사제 또는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그 필요에 알맞게 드리는 여러 가지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미사 지침, 333 항)

기원 3 : 교우들의 필요와 신심을 위하여 집전 사제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미사 지침, 329 항 2.3)

위령 1 : 장례 미사 (미사 지침, 336 항)

위령 2 :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첫 미사, 장례가 있는 날과 제 1 주년 기일의 위령 미사 (미사 지침, 337 항)

위령 3 : 보통 위령 미사 (미사 지침, 337 항)

기원 1 또는 2 그리고 위령 1 또는 2의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그 다음 숫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도 분명히 금지된다.

+ : 허용, - : 금지

1. 의무 대축일	기원 1-
	위령 1-
2.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	기원 1-
	위령 1-
3. 파스카 삼일, 성주간 목요일	기원 1-
	위령 1-
4. 의무가 아닌 대축일, 위령의 날	기원 1-
	위령 1+ 위령 2-
5.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화, 수요일	기원 1-
	위령 1+ 위령 2-
6. 부활 팔일축제 내	기원 1-
	위령 1+ 위령 2-

7. 성탄시기, 연중 시기의 주일		기원 1+	기원 2-	위령 1+	위령 2-	
8. 축일		기원 1+	기원 2-	위령 1+	위령 2-	
9. 12 월 17-24 일의 대림 시기 평일	기원 1+	기원 2-		위령 1+	위령 2+	위령 3-
10. 성탄 팔일 축제 내	기원 1+	기원 2-		위령 1+	위령 2+	위령 3-
11. 사순 시기 평일	기원 1+	기원 2-		위령 1+	위령 2+	위령 3-
12. 의무 기념일	기원 1+	기원 2+	기원 3-	위령 1+	위령 2+	위령 3-
13. 12 월 16 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기원 1+	기원 2+	기원 3-	위령 1+	위령 2+	위령 3-
14. 1 월 2 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기원 1+	기원 2+	기원 3-	위령 1+	위령 2+	위령 3-
15. 부활 시기 평일	기원 1+	기원 2+	기원 3-	위령 1+	위령 2+	위령 3-
16. 연중 평일	기원 1+	기원 2+	기원 3+	위령 1+	위령 2+	위령 3+

미사의 선택

(미사 지침, 314 - 316.323 항)

6. 대축일에는 모든 사제가 미사 드리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라야 한다.

주일과, 대림 시기, 성탄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등의 평일, 축일과 의무 기념일에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미사 드리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라야 하고, 교우 없이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르거나 자신의 고유 전례력을 따를 수 있다.

12 월 17 일부터 24 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축제 내 평일,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을 제외한 사순 시기 평일에는 모든 사제가 전례력에 따라 해당 평일 미사를 드린다. 이 날들에 오는 의무 기념일이나 선택 기념일에 관해서는 29 면의 2 항을 참조한다.

12 월 16 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 월 2 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부활 시기 평일에는 모든 사제가 평일 미사 또는 기념일로 지정된 성인의 미사 또는 순교록에 수록된 성인의 미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연중 평일에는 모든 사제가 평일 미사 또는 성인 미사 또는 다음 항에 나오는 다른 미사를 선택할 수 있다(29 면 1 항 참조).

7. 사제가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때에는 교우들의 영신적 선택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경향을 교우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각 평일에 정해 놓은 독서들을 충분한 이유 없이 자주 생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회는 이로써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의 식탁을 더욱 풍부하게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같은 이유로써 위령 미사도 절제 있게 봉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미사든지 죽은 이들뿐 아니라 산 이들을 위하여 봉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원, 신심 미사와 기도문

(미사 지침, 326 - 334 항)

8. 독서와 기도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할 때에 한하여 절제 있게 기원 미사를 드려야 한다. 모든 기원 미사에서, 달리하라는 명시가 없는 한, 평일 독서를 사용할 수 있고, 독서 사이의 화답송도 그 기원 미사에 알맞은 것이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9.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과 관련된 예식 미사는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모든 주일, 대축일, 부활 팔일축제,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에는 금지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예식서나 미사 전례서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10. 여러 가지 기원 미사, 신심 미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위에서 열거한 날들 이외의 모든 날에는 교구장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아 어떤 중대한 필요나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미사를 드릴 수 있다. (9 항 참조)

2) 의무 기념일이나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부활 팔일축제 이후의 부활 시기 평일에는 **본래 신심 미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참된 필요나 사목적 선익 때문이라면(예컨대 매월 첫 금요일 등), 본당 주임 사제나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이런 날이라도 그 필요에 알맞은 미사를 드릴 수 있다.

3) 의무 기념일이 아닌 연중 평일에는 교우들의 자유로운 신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를 드릴 수 있고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의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미사에서 평일 미사의 독서와 기도문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연중 토요일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선택 기념은 모두 허용된다.

혼인 고유 미사

11. 미사중에 혼인이 거행될 때 그 미사는 백색 제의를 입고 ‘혼인 고유 미사’를 봉헌한다. 주일이나 대축일 때에는 그 날 미사를 드리고,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만 ‘혼인 고유 미사’에서 취한다. 파스카 삼일 또는 의무 대축일이 아닌 한 혼인 예식을 위한 독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탄 시기 주일과 연중 주일에는, 본당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는 미사 중에 혼인이 거행될 때, ‘혼인 고유 미사’를 드려도 된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는 혼인 예식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교황, 주교, 신부 자신의 수품 주년 기념

12. 연중 평일에는 수품 주년 기념 미사를 드릴 수도 있고 평일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문 전부 또는 본기도만을 수품 주년 기념 미사에서 취할 수 있다. 이런 기념 미사가 사목적으로 매우 선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규정에 따라(10 항 참조), 다른 날에도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이런 수품 주년 기념에 관하여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는 것이 매우 좋다.

위령 미사

(미사 지침, 335 - 341 항)

13. 위령 미사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미사는 장례 미사이다. 장례 미사는 의무 대축일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삼일,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이 아니면 어느 날에나 다 드릴 수 있다. 장례 미사 직후에 장례식이 있으면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 마침 예식을 생략하고 고별기도를 한다. 고별기도는 시신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시신 옆에 부활초를 켜 놓는 것이 좋다.

14.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첫 미사, 장례가 있는 날과 제 1 주년 기일의 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에는, 의무 기념일이라 하더라도 위령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다른 위령 미사는 드릴 수 없다.

15. 보통 위령 미사는, 교우들의 참된 선택이 요청되지 않는 한, 선택 기념일인 연중 평일에만 죽은 이를 위하여 허락된다.

16. 위령 미사에서는 흑색보다 자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박한 흰 제의를 사용해도 좋다. (1970 년 6 월 30 일~7 월 2 일 주교회의 임시총회 결정)
제대에는 꽃을 놓지 말고,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를 지탱해 주는 정도로 허용된다.

미사 예물에 관하여

(성직자성 교령, 1991 년 2 월 22 일)

17.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교회법, 제 948 조). 따라서 개별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예물을 받은 사제는 정의에 따른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직접 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거나 또는 법으로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책무 이행을 다른 사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회법, 제 948 - 949, 954 - 955 조 참조)

여러 봉헌자들이 사전에 그리고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되어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하는, 이른바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교구 규정으로 미사 집전자가 한 대의 예물만 가지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러한 교구 예물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권자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교회법, 제 946.950 - 951 조 참조)

미사의 여러 부분에 관한 유의 사항

18. 대영광송은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가 아닌 모든 주일과, 모든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특수한 축제 때에만 한다. (미사 지침, 31 항)

19. 대축일 또는 축일, 그리고 고유 독서(신비나 성인에 관한 고유 독서)가 있는 기념일이 아니면 보통으로 「미사 전례 성서」에 있는 지정된 독서를 봉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전례 거행으로 연속 독서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주간 전체의 독서 내용으로 보아 사제는 어느 것을 생략해야 좋을지, 또는 다른 날 독서와 묶어서 봉독하든지 자유로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특수한 모임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그 미사에 적합한 다른 독서를 봉독할 수 있으나, 인준 받은 「미사 전례 성서」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미사 지침, 319 항)

20. 신경은 주일과 대축일에 외어야 한다.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도 할 수 있다.

21. 감사기도를 바치는 규정은 각각의 감사기도 안에 수록되어 있다.

고유 감사송이 있는 미사에서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감사송이 딸린 감사기도를 사용할 수 없다. 곧 제 4 양식처럼 감사송이 감사기도의 전체 기도문과 일치를 이루는 감사기도를 사용할 수 없다.

22. 교우들은 동일한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한 때에는 성혈도 받아 모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성체는 거행되는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표시가 된다. (미사 지침, 56.242 항)

23. 이미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 다시, 곧 하루에 두 번까지,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 (교회법, 제 917 조 참조)